■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8. 5. 17.>

(앞쪽)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연월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의 재활용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량	재활용제품의 공급 및 보관 내용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용				결 재
		재활용량	재활용제품			공 급 처			공급량	보관량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량	처리자 (처리방법)	
			종 류	생산량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용 용도							
누계															

364㎜×25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 고철, 유리병, 페트병, 종이팩, 금속캔,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적습니다.
3. 연월일은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또는 재활용제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습니다.
4. 재활용제품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생산한 제품이 에너지인 경우에는 증기, 온수 등 에너지의 종류) 또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재활용대상 폐기물 보관량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6.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습니다.